

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-0418호

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제3항 및 제11조3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.

2011.9.30.

기술표준원장

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제정

전기차 충전시스템의 화재·감전 등의 전기적인 안전성 확보와 전기차 보급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다음과 같이 6종의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추가함

= 다 음 =

제3조(강제적용 안전기준) [별표 1]에 6 종의 안전기준을 제정 추가한다.

- 1) K 61851—1(전기차 충전시스템 제1부 : 일반 요구사항)
- 2) K 61851—22(전기차 충전시스템 제22부 : 교류 충전장치)
- 3) K 61851—23(전기차 충전시스템 제23부 : 직류 충전장치)
- 4) K 62196—1(전기차 충전시스템 — 플러그, 소켓-아울렛, 커넥터 및 인렛 —제1부 : 일반 요구사항)
- 5) K 62196—2(전기차 충전시스템 — 플러그, 소켓-아울렛, 커넥터 및 인렛 —제2부 : 교류용 치수 호환성 및 교환성 요구사항)
- 6) K 10022(전기차 충전시스템 — 플러그, 소켓-아울렛, 커넥터 및 인렛)

※ 제정 안전기준 세부내용 (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: www.kats.go.kr)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2011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.